



반성폭력 학칙, 아프냐? 나도 아프다

표지에 사용한 그림은 일러스트레이터 이재순님의 그림입니다.



반성폭력 학칙,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해방이화 35대 해피바이러스 총학생회
9대 이화 여성위원회

contents

1

들어가며

2

반성폭력 학칙 제정과정과 재개정된 내용

3

반성폭력 학칙, 무엇이 문제인가?

23

나가며

| 들어가며 |

지난 학기 동안 여성위원회는 타대 여성운동단위들과 함께 많은 학교들의 반성폭력 학칙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화의 학칙을 내놓자니 한숨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가부장적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학칙은 여전히 부재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화의 학칙은 최악의 사례에 꼽힐 정도로 수준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대이기에,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여대생'이라는 말에 쏟아지는 수많은 폭력적 시선들.

그 시선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교수님의 폭언들.

그리고 나를 침묵하게 하는 무거운 공기.

축제 때마다 집단으로 몰려오던 남학생들에 대한 불쾌한 기억.

그리고 사이버 상에서까지 벌어지는 '이화'를 향한 무수한 비난들.

오히려 여대이기에, 타학교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화 반성폭력 학칙의 재개정을 요구합니다.

| 반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과 재개정된 내용 |

1.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 2001 이화 반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을 이르는 말

1997년을 전후하여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그무렵 이화에서도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학칙 제정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학교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다. 그렇게 계속되던 학칙 제정 제안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던 학교는 2001년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자 그제야 학칙 제정을 시작했다.

예초 2001년 2월경 학교 당국의 졸속 제정을 막고자 여성위원회와 해방이화 33대 총학생회, 50대 대학원 총학생회가 이화학칙준비위원회(이하 학준위)를 꾸렸다.

그 때 학칙은 뼈뚫한 제출일정(그해 4월 17일)으로 인해 아무런 조사와 논의 없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다 제정 과정 또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학준위는 지속적으로 학교당국과의 미팅을 요청했고 그 결과 3,4월 동안 기획처장, 기획처 부처장, 학생처장, 학생처부처장과 함께 3차례 비공식 미팅을 가졌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 테이블이 아니었고 학교측에서 학칙 제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만으로는 학준위의 의견이 반영되기로 매우 어려웠다.

처음, 학교 당국은 교육부의 지침하에 만들어지는 학칙이기 때문에 모범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칙의 명칭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은 형법상으로 특별법이고 이미 제정된 타 학교의 학칙 역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학교가 교육기관의 성격을 충분히 감안하여 학칙을 만드는 것은 문제시 될 수 없다는 학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명칭에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넣는 것에 합의 하였다. 그 후 몇 차례 학교측의 가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5월 초 이화의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1997년부터 제안했지만 꿈쩍도 않던 학칙은 2001년 5월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딱 3개월 만에.

2. 2003 재개정된 이화 반성폭력학칙

2001년 5월 9일 정신없이 제정된 이화 반성폭력학칙은 2003년 2월 7일, 이번에는 소리소문없이 재개정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간 꾸준히 있어왔던 반성폭력학칙 재개정운동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태반 수행되지 않은 채, 그저 바뀌었다는 것만 강조하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재개정 밖에는 되지 않았다.

| 반성폭력 학칙, 무엇이 문제인가? |

1. 성폭력의 개념 - 성희롱, 성폭력의 구분, 구체성 X

● 이화의 학칙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교육,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2.7)

이화의 학칙은 그 정식 명칭이 '성희롱 등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성폭력보다는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선호한다. 여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수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이를 최대한 완화시켜서 표현하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사용은 문제의식을 희석화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화는 법률상 정의되는 대로 성희롱·성폭력 개념을 이원적으로 구별한다. 이는 법의 보수적인 관점을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가해자의 성기 삽입 유무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성폭력의 상황에 대한 맥락을 전적으로 배제시킴으로서, 성폭력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의 형식적 저항유무만을 중요하게 고려하게 한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요한 법익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성희롱·성폭력 개념의 구분조차 지극히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재단되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화의 학칙은 그 정의가 매우 간단명료하다. 그래서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이 그 정의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충분히 빠져나갈 여지를 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풀이를 덧붙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 다른 학교의 학칙 - 부산대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와, 성범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일

나. 상대의 신체에 강제적이고,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권을 빌미로 간음, 강제추행, 강간, 또는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라. 술과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마.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바.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 등을 보내거나 보여주는 것

사. 사이버 공간에서 텍스트 및 이미지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하는 것

아. 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

자.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차.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부산대 학칙은 법률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해 별 의미를 두지 않고, 대신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동성간 성폭력에 관한 문제이다.

동성간 성폭력은 쉽게 담론화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동성간 성폭력 = 동성애자간 성폭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애중심의 사회에서 동성간 성폭력은 '그들만의 음란행위'로 간주될 뿐이다. 그렇기에 동성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및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다 할지라도 피해자는 그것을 '성폭력'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피해자는 자

신이 처할 아웃팅의 위험 때문에 그 피해자가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건 간에 사건을 신고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상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 해결의 주체들마저 호모포비아적인 관점으로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내몰 것도 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칙에 동성간 성폭력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첫째로 실제 존재하는 성폭력 상황을 학칙안에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동성간 성폭력을 명확히 성폭력으로 문자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동성간 성폭력은 결코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동성애자-동성애자간은 물론이거니와 동성애자-이성애자간, 이성애자-이성애자간에도 성립될 수 있다. 성폭력은 강제 성기 삽입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동 전체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학칙 재개정시에는 이러한 동성간 성폭력 문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칙과 더불어 '동성애'와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개인들의 호모포비아적 인식 또한 바뀌 나가야 할 것이다.

2. 적용범위 - 일방만 해당된 경우의 문제, 시간강사와 휴학생

● 이화의 학칙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폭력에 적용한다.
- ② 본교 구성원이 피해자 또는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인 때에는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2.7)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교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의 교직원, 시간강사, 연구원, 박사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및 기타 임시직, 학생, 교환학생을 말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교육, 연구 및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2.7)

반성폭력 학칙의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학칙 2조와 3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일단 2조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본교 구성원 사이"라는 부분이다. 분명 성폭력은 교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가해자로 인해 본교 구성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혹은 본교 구성원이 외부에 가해를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교 구성원이라는 말은 그런 수많은 경우들을 무시해 버린다. 그래서 올해 초 소리 없이(?) 개정된 2항, '본교 구성원이 피해자 또는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일 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다. 별도로 정하는 바? 필자 열심히 눈썰미 찾아봤으나 별도로 정한 바는 이 규정 어디에도 없다. 조금 첨가해서 외부인도 규정에 적용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화 내의 성폭력 사건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화인들은 외부의 성폭력의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다. 수많은 사이버 성폭력이 그렇고 축제 때마다 벌어졌던 고대생 집단 성폭력 사건등이 그러하다. 분명히 외부인들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야만 한다.

다음으로 3조를 살펴보자. 3조에서는 본교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시해 놓은 조항이다. 물론 이 조항에도 문제는 있다. 구성원들의 위치 변동이 있을 때 적용하

기에 애매한 점이 드러난다. 예를들어, 시간강사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경우 학칙상으로는 어떠한 해결도 할 수가 없다. 학생이라는 규정 역시 문제가 되는데, 학생이라는 말에는 휴학생도 포함이 되는지 혹은 그냥 재학생들만 포함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휴학생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 다른 학교 학칙

1) 학생범위 구체적 명시 | 부산대학교 학칙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피의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1)교원은 전임교수, 시간강사, 조교, 촉탁직, 외인교수로 학생은 본교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재적생, 연구생, 교환학생으로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 일용직을 포함한다.

2)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성원의 지위변동 | 서울시립대 학칙

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④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부산대의 학생 규정의 경우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의 재적생, 연구생, 교환학생”이라는 구체적 명시가 있다. 시간강사등의 지위변동에 관해서는 서울시립대의 경우 “지위변동은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화의 학칙 역시

이러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

3. 피해자 지원 규정 - 피해자중심주의 X

● 이화의 학칙

제12조 (사건 관계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③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 또는 미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7)

④ (삭제 2003.2.7)

기껏 개정되었다는 이화의 학칙은 12③에서 ‘~유포할 수 없다’가 ‘~유포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고쳐지고, 12④에서 ‘제3항을 위반할 때에는 본교 규정에 의하여 징계한다’가 삭제된 정도이다. 여전히 학칙 안에서는 ‘모든 관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그렇게 이화에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왜 피해자중심주의가 필요하냐고 묻는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진술하면서 또 한 번 어디 한 번뿐이겠는가 그 당시의 경험을 상기해야하는 괴로움에 시달린다. 게다가 가해자의 거듭되는 2차 가해에까지 노출되게 되면 피해자는 단순히 고통받는 것을 넘어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할 의지 자체를 잃을 정도로

낙담하게 된다. 적어도 학칙으로 피해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좀 더 신뢰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다른 학교의 학칙 - 부산대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중점으로 해야 한다.

제5조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폭력의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고 동반할 권리를 가지며, 피해자나 대리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특정인의 관여를 거부할 권리

2.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기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② 사건신고를 접수한 자와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조사해야 한다.

④ 성폭력행위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직접 회부, 의견을 통해 처리한다.

부산대의 학칙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을 들자면,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호' 라는 다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보다는, '지원' 혹은 '권리'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더 적합할 듯 하다.

4. 가해자 징계관련

● 이화의 학칙

제9조 (위원회의 시정 등 권고)

① 위원회는 성희롱 시정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총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성폭력 시정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총장에게 가해자의 징계를 권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7)

a. 강제력이 없다.

이화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소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배제라' 식으로 버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비슷한 조항을 둔 다른 학교들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방치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속수무책으로 가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피해자와 지원단위는 무력감을 느끼고 급기야 사건 조사를 포기하게 된다.

또 위와 같은 힘든 과정을 거쳐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은 힘들다. 가해자에 대한 시정권고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뚜렷한 징계조치에 대해 언급이 없으며 강제력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내 상황을 살펴보면 총장에게 징계를 권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설령 징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징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 다른 학교 학칙

부산대 학칙

제16조 (결정 및 처리)

1) 위원회는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①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 ②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③ 가해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
- ④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 ⑤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

서울대 학칙

제11조 (징계)

② 소장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산대 규정에는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 있다. 서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서울대 규정 11 조 ②항의 '경미한' 사건이라는 것은 좀 애매하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그것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b.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조항이 없다.

피해자는 조사과정 중에 계속되는 2차, 3차 가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잊고 싶은 기억을 힘겹게 되살려 조사를 진행시키려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성폭력이 가해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하지만 현재 이화의 학칙으로는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중 징계할 수 없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사건 해결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가중 징계를 통해서 피해자 보호의 여지를 넓혀가야 한다. 덧붙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제재하거나 이행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다른 학교 학칙

단국대 학칙

제13조 (징계) ③ 가해자가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 또는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부산대 학칙

제16조 (결정 및 처리) ⑥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5일 이내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경대 학칙

제15조 (가해자에 대한 처벌)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징계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할 경우에는 가중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사건을 조사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징계하고 강제로 이행시킬 권한을 규정하는 것은 필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5. 위원회의 위상

a 학생위원과 여성위원

대부분 X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권한
상당수

● 이화의 학칙

제5조 (성희롱심의위원회) 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처장, 총무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화의 학칙에는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학생들과 연관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이를 학칙에 의해 처리한다고 할 때 학생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는 학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자치성을 보장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수인 경우 가해자에 동일시하기 쉬운 동료 교수들만의 결정으로 피해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위원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권리를 찾

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고 그러하기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존재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학생위원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위원회 등의 여운단위에서 동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이 최선은 아니며, 피해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성보다 여성이 성폭력적인 상황에 훨씬 많이 노출된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에 대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교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는 여성 의무 비율을 위원회 안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다만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피해자 중심주의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므로 위원회의 반드시 피해자의 추천을 통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다른 학교 학칙

연세대 학칙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연세대의 경우 여성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위원의 참여 또한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여성 의무 비율을 전체의 2분의 1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b. 사건종결권한 위원회가 갖고 있다.

● 이화의 학칙

제7조 (성희롱 및 성폭력 조사) ① 위원회는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성희롱 및 성폭력에 의한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2. 성희롱 및 성폭력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항에 관하여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2.7)

이화의 학칙에서는 사건 조사를 조사위 자체에서만 판단하여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사 사항 자체의 정당한 이유 유무나 적절성 유무를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루어져 문제가 크다. 학내 사건에 있어 학생을 배제하는 것은 학생의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특히 교수 성폭력에 관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려더라도 피해자는 위원회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 또 제 7조 1호의 '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다. 사회구조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말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1년이라는 기한을 두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6. 상담소와 위원회

● 이화의 학칙

제5조 (성희롱심의위원회) ①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처장, 총무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심의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조사, 심의 및 시정 권고 (개정 2003.2.7)

3. 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 권고 (신설 2003.2.7)

4.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개정 2003.2.7)

5.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개정 2003.2.7)

④ 위원회는 성희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신고의 접수 (개정 2003.2.7)

3.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4.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상담 (개정 2003.2.7)

5. 기타 위원회의 위임사항

⑤ 제3항 제2호·제3호 및 제4호, 제4항 제3호 및 제4호는 본교의 구성원이 피해자 또는 가해의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인 때에도 적용한다. (본항 신설 2003.2.7)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해결하기 위해 대책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 위원회에 대한 규정인 5조를 살펴보면 하자, 일단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학생위원이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특히 쉽게 공개 되지 못하고 조용히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성폭력 사건이기에 학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위원들에 대한 규정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만에 하나 가해자의 친구가 학생위원으로 활동한다거나 혹은 위원인 교수가 가해자의 동료일 경우 같은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희롱 상담실에 대한 규정의 경우, 일단 성희롱/성폭력의 개념을 법률상 정의대로 구분하고 있는 성희롱 상담실이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게다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상담실이 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되

어 있다. 상담실은 위원회와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구성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상담원이 상담실에 있어야만 한다. 전문 상담원에 관련된 규정이 학칙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마음 놓고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 성희롱 상담실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은 피해자의 조심으로 예방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예방에 대한 교육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대동제 때 상담실이 주관한 '월경주기 팔찌 만들기'는 이러한 상담실의 소극적이며 모순되는 입장을 여실히 드러낸다. 자신의 월경주기를 아는 것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한 캠페인 자체는 과연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담론의 모순을 해체시키고 있는가. 문제는 처음부터 상담실이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학내에서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은 성기가 삽입되는 성폭력이 아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이며 당연히 모든 성폭력과 임신가능성이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동성 간 성폭력, 강의실에서의 언어 성폭력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성폭력 상황들이 상담실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 물론 성기 삽입 성폭력 상황에서조차 월경주기 팔찌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이와 성희롱 상담실은 성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폭력 상황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다른 학교 학칙

고려대 학칙

제7조 (구성) ① 상담소를 대표하고 상담소 전반의 업무를 총괄할 상담소장을 둔다. 상담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총장의 명에 따라 여학생감이 겸임하며,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연구원 또는 전문상담원을 두며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상담소장이 위촉한다.

③ 그 외 상담소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행정조교 1인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소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할 행정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부산대 학칙

제7조 (구성) 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실장과 상근 상담원 1인 이상을 둔다.

1. 상담실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상근 상담원은 여성학 관련 전공교수 또는 석 박사과정을 이수한 전공자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학생생활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상담실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려대의 경우 상담원 규정과 자격규정 문구가 학칙 상에 존재하며, 부산대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자' 라는 규정이 있다.

이화에 비해 훨씬 나은 학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문지식이나 해당 분야라는 말이 애매모호하다. 어떤 교육이고 또 어떤 활동인지에 대한 자격 요건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나가며 |

소리 소문 없이 개정된 반성폭력 학칙.

그 과정에서 이화인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여성" 그리고 "이화인"에게 힘이 되는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될 때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반성폭력학칙재개정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9대 여성위원회

학생문화관 218호 4708 ewhalovewom@hanmail.net

35대 총학생회

학생문화관 211호 4701 happyvirus2003@hanmail.net